

Vol.1527

# 법원공보

2017. 9. 1. FRI.



법원행정처

## ● 목 차

내 규	1237	직원상담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
예 규	1245	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	1247	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신법령 목록	1249	

## ● 내 규

### ◎ 직원상담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489호 2017. 8. 21. 결재)

직원상담에관한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직원상담에관한내규”를 “직원상담에 관한 내규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진입”을 “전입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상담 내용) 과·소장은 법원공무원의 개인별 근무조건·인사관리·직장 내의 업무와 동료관계로 인한 고충사항 및 그 밖에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한편,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담 카드 변경에 따른 종전 상담 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내규 상담 카드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성된 상담 카드는 법원공무원이 진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상담카드

[별지 제1호 서식]

소속	법원
기관	지원 등기소

(전면)  
상담 카드

전입일자	20 . . .
전출일자	20 . . .

1. 현직급	2. 성명(한자)		3. 성별	4. 생년월일	5. 사진			
6. 주소					사 진			
7. 최초임용일	. . .	8. 현직급임용일	. . .	9. 전화번호				
10. 현직급법원경력	기간	소속기관		부서	담당업무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11. 현기관내경력	기간	부서	12. 법원가족관계	소속	부서	직급	성명	관계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	20 . . . ~ 20 . . .							
13. 건의사항 기타의견								

(후면)

14. 특이사항		
15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건의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기재요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항부터 제10항까지, 제12항 및 제13항의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한다.</li> <li>2. 제10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현 소속기관 내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3. 제11항 중 최초기재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하고 그 후의 사항은 과소장이 전보 시마다 정리한다.</li> <li>4. 제12항에는 법원에 근무 중인 4촌 이내의 가족을 기재한다(법관,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원공무원).</li> <li>5. 제14항에는 평소의 근무상황과 그 밖에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특이사항을 기재한다.</li> </ol>	

[별지 제2호 서식] 상담카드

[별지 제2호 서식]

(전면)

15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건의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
(후면)

15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건의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20 . . .		(인)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# 현행

제3조(시기) ① 법원공무원이 과·소에 새로 진입 된 경우 및 과·소장이 새로 보임된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#### 제4조(상담 내용)

과·소장은 상담 절차를 통하여 법원공무원의 가족, 재산, 건강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, 개인별 근무조건·인사관리·직장 내의 업무와 동료관계로 인한 고충사항 및 가정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한편,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상담카드

소속 기관	법원 지원 등기소	(전면) 상담 카드	권임일자 19 . . . . .	권출일자 19 . . . . .			
1. 현직급	2. 성명(한자)	3. 성별	4. 주민등록번호	5. 사진			
6. 본직	( )			사 권			
7. 주소							
8. 취조일 음일	19 . . . . .	10. 신장	체중	별력·기병 기타 특이사항			
9. 현직급입용일	19 . . . . .	신체사항	연	보			
11. 현직급입용일경력	기간	소속기관	부서	담당업무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12. 현직급내정내역	기간	부서	관계	성명	출생년	등기여부	학력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19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19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19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19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19		
13. 가포공제	기간	부서	소속	부서	직급	성별	포제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		
14. 생활 및 재산관계	기간	학교 및 과정	15. 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학 력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
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19 . . . . . ~ 19 . . . . .				
16. 권의 사항 기타 의견	가가( ) 시기 환	환	차관				
	차가( ) 보물금 환	환	배기량				
	기타	기타	소득원				
태기 필	권위 필	소득	소득액				

#### 개정안

제3조(시기) ① -----진입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#### 제4조(상담 내용)

과·소장은 법원공무원의 개인별 근무조건·인사관리·직장 내의 업무와 동료관계로 인한 고충사항 및 그 밖에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한편,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상담카드

소속 기관	법원 지원 등기소	(전면) 상담 카드	권임일자 20 . . . . .	권출일자 20 . . . . .			
1. 현직급	2. 성명(한자)	3. 성별	4. 생년월일	5. 사진			
6. 주소				사 권			
7. 취조일 음일	19 . . . . .	10. 신장	체중		별력·기병 기타 특이사항		
9. 현직급입용일	19 . . . . .	신체사항	연	보			
10. 현직급입용일경력	기간	소속기관	부서	담당업무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11. 현직급내정내역	기간	부서	소속	부서	직급	성별	포제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	20 . . . . . ~ 20 . . . . .						
13. 권의 사항 기타 의견							



현행

(후면)

17. 특이 사항 (상법관계)			
18. 상담 사항			
상담일자	상담 내용	고충·건의 기타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기재요령	1. 제1항 내지 제11항 및 제13항 내지 제16항의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한다. 2. 제11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현 소속기관 내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. 3. 제12항 중 의조기재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하고 그 후의 사항은 과·소장이 전보시마다 정리한다. 4. 제17항에는 상법관계, 법소의 근무상황 기타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특이사항을 기재한다.		

[별지 제2호 서식]

(전면)

18. 상담 사항			
상담일자	상담 내용	고충·건의 기타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19 . . . .			(인)

개정안

(후면)

14. 특이 사항		
15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건의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기재요령	1. 제11항부터 제10항까지, 제12항 및 제13항의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한다. 2. 제10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현 소속기관 내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. 3. 제11항 중 위조기재 사항은 법원공무원 본인이 기재하고 그 후의 사항은 파·소장이 전보시마다 정리한다. 4. 제12항에는 법원에 근무 중인 4촌 이내의 가족을 기재한다(법원, 정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원공무원). 5. 제14항에는 법소의 근무상황과 그 밖에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특이사항을 기재한다.	

[별지 제2호 서식]

(전면)

15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건의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20 . . . .		(인)

현행

(후면)

18. 상담 사항			
상담일자	상담내용	고충권외 기타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19 . . . .			(연)

개정안

(후면)

19. 상담 사항		
상담일자	고충·권외와 그 밖의 특기 사항	상담자 성명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20 . . . .		(연)

## 예 규

### ◎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36호 2017. 8. 7. 결재)

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7일”을 “7일(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실시한다”를 “실시하되, 주간·야간·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단서 중 “다만 「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”을 “다만, 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# 현행

제1조 (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) ① 집행관은 서류 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조 (송달불능의 조치) 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 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. 다만 「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」 제 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개정안

제1조 (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) ① -----  
----- 7일(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)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조 (송달불능의 조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실시하되,  
주간·야간·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 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다만, 「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-----.

**◎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**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37호 2017. 8. 17. 결재)

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I. 5. 나. ○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세 번째 - 중 “다만,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.”를 “다만, 상한액 중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,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200만원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예규는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II.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급액</p> <p>○ 총지급액 (생략)</p> <p>○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</p> <p>- (생략)</p> <p>- (생략)</p> <p>-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<u>다만,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.</u>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,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한다.</p> <p>○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	<p>II.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</p> <p>1. 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지급액</p> <p>○ 총지급액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</p> <p>- (현행과 같음)</p> <p>-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다만, 상한액 중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,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200만원으로 한다.</u> -----.</p> <p>○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

## ● 신법령 목록 (2017. 8. 1. ~ 8. 15.)

		공포일	관보호수	관보면수
<b>【법률】</b>				
법률제14841호	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	2017. 8. 9	19069	5
법률제14842호	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	"	"	5
법률제14843호	통계법 일부개정법률	"	"	6
법률제14844호	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	"	"	7
법률제14845호	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	"	"	8
법률제14846호	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	"	"	8
법률제14847호	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	"	"	11
법률제14848호	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	"	"	16
법률제14849호	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	"	"	18
법률제14850호	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	"	"	18
법률제14851호	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"	"	19
법률제14852호	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21
법률제14853호	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	"	"	22
법률제14854호	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	"	"	23
법률제14855호	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	"	"	24
법률제14856호	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26
법률제14857호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	"	"	26
법률제14858호	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	"	"	30
법률제14859호	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"	"	30
법률제14860호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31
법률제14861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	"	"	32
법률제14862호	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"	"	32
법률제14863호	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33
법률제14864호	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	"	"	33
법률제14865호	주택도시자기금융법 일부개정법률	"	"	34

법률제14866호	주택법 일부개정법률	2017. 8. 9	19069	35
법률제14867호	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	"	"	37
법률제14868호	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	"	"	38
법률제14869호	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39
법률제14870호	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	"	"	42
법률제14871호	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	"	"	43
법률제14872호	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	"	"	45
법률제14873호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	"	"	47

**[조약]**

조약제2360호	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	2017. 8. 4	19066	4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

**[대통령령]**

대통령령제28209호	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	2017. 8. 1	19063	5
대통령령제28210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
대통령령제28211호	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28212호	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7
대통령령제28213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9
대통령령제28209호	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정정	2017. 8. 4	19066	68
대통령령제28210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68
대통령령제28211호	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68
대통령령제28212호	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68
대통령령제28213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68
대통령령제28226호	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2017. 8. 7	19067 (그2)	2
대통령령제28227호	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28228호	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28229호	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7



대통령령제28230호	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	2017. 8. 7	19067 (그2)	9
대통령령제28231호	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0
대통령령제28232호	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8. 9	19069	48
대통령령제28233호	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	"	"	48
대통령령제28234호	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1
대통령령제28235호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2
대통령령제28236호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5
대통령령제28237호	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7
대통령령제28238호	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9
대통령령제28239호	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	"	"	62
대통령령제28240호	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0
대통령령제28241호	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3
대통령령제28242호	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6

### 【총리령】

총리령제1412호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2	19064	4
총리령제1407호	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4
총리령제1413호	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3	19065	5
총리령제1414호	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7	19067 (그2)	11
총리령제1415호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9	19069	86
총리령제1416호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7
총리령제1417호	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10	19070	4

### 【부령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호	전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1	19063	9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

법무부령제905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1	19063	11
국방부령제931호	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	"	"	12
보건복지부령제510호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3
고용노동부령제193호	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	"	"	14
법무부령제906호	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4	19066	68
보건복지부령제509호	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	"	"	69
보건복지부령제511호	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0
보건복지부령제512호	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	"	"	71
문화체육관광부령제302호	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7	19067	4
환경부령제709호	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19067 (그2)	11
고용노동부령제194호	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3
국방부령제932호	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8	19068	4
농림축산식품부령제278호	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4
산업통상자원부령제266호	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	"	"	11
보건복지부령제513호	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2
행정안전부령제5호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9	19069	91
보건복지부령제514호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93
환경부령제710호	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	"	"	116
보건복지부령제512호	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정정	"	"	148
농림축산식품부령제279호	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11	19071	4
여성가족부령제109호	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
행정안전부령제6호	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8. 14	19072	4



